

보도일시 2021. 9. 28.(화) 조간 *인터넷 2021. 9. 27.(월) 12:00 이후 / 총 20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장현석	044-202-7994
		서기관 조아라	044-202-7543
		사무관 이상전	044-202-754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마련 배포 -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 연구개발 부서 등의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

■ **사례A**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 이에 근로시간의 유동성이 많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근로를 도입하고, 의무근무시간대 11시~16시, 출근시간대 07시~11시, 퇴근시간대 16시~20시를 운영하여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인력확보(신규채용, 2명)* 등을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 1명(21.3월)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1명은 현장실습(9월~) 후 11월 채용 예정

■ **사례B**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주)○○○은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 이에 연구개발직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 **사례C** 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출판업과 산업제품 B2B통합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은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사자 및 연장근로 발생하게 됐다. ⇨ 이에 정시퇴근 문화 확산 및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였으며,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 '19.12.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행(고령자 계속고용, 연차사용 촉진 추가 등)

〈주52시간제 도입 경과 및 평가〉

□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하여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잘못된 일 28.5%),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계획보다 늦게 23.8%)('18.8월 문체부 조사)

-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20.5월 국회사무처)

○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21.4월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조사)

-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 비중(%), 주업과 부업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 기준: ('17) 15.1 → ('18) 11.9 → ('19) 9.7 → ('20) 7.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분석>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 ('19년) 5,270개사 → ('20년) 4,096개사 → ('21년) 4,165개사(목표 4,400)

** [중앙단위] 유튜브 설명회(3.26) → 업종별 설명회(게임·뿌리·조선·벤처 등 10개업종(5~7월) [지방단위] 지역 업종별 협단체등과 협업하여 설명회·간담회 등 추진(7~8월, 119회)

-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경영 상황별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도】

○ 5인 이상 전 사업장

- ① 성비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편차 → 탄력근로(2주, 3월, 3~6월)
- ② 근로자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 → 선택근로(1월, 3월) 또는 재량근로
- ③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 → 특별연장근로
- ④ 외근·출장이 많은 경우 → 사업장 밖 간주 근로

○ 5~29인 사업장

위 ①, ②, ③, ④ +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최장 60시간까지 가능, ~'22.12.31.)

* 5~29인은 5~49인의 94.9%(742,866/783,072개소), 30~49인은 5.1%(40,206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 ①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②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③유연근로시간제, ④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⑤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분야의 근로시간 운영 사례.

별첨: 근로시간제도의 이해(Q&A).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서기관(☎044-202-7543) 이상전 사무관(☎044-202-7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IT·SW 및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1 배경

- '21.7.1.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시행되었으나, 일부 IT·SW 및 연구개발 분야 기업에서는 주52시간제가 기업에 맞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
- ⇒ 그러나 동일 분야에서, **법상 유연근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법을 준수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

2 IT·SW,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업무효율화, 근로문화 개선 (휴가 활성화, 정시퇴근 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52시간제 준수

① (유연근무제 활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잦은 업무량 변동(증가)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동성에 대응

- 시차출퇴근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활용**

☑ 기업사례 1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 수 6명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2명)*** 등 조치
- * 신규 채용자 1명('21.3월)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인건비 매월 190만원, 6개월)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9월부터 현장실습 후 11월 채용 예정
- ▶ 의무 근무시간대 11시~16시, 출근시간대 07시~11시, 퇴근시간대 16시~20시로 근로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 '20.5월부터는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도입·운영하여 일시적 업무량 증가(단기 프로젝트 등)에 대응

☑ 기업사례 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근로자 수 36명

- ▶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21.6)하고** 등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2주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21.6)하여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 → 2주 평균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 기업사례 3 * 전기,전자 제조(LCD, SEMICONDUCTOR), 근로자 수 40명

- ▶ 경영지원·구매팀·제조·설계부서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설계부서, 제조(설치 등 외근 포함)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발주 물량, 외근, 작업 프로세스로 인하여 1주 12시간이 초과되는 연장근로 다수 발생. 사업 특성상 물량 등의 예측이 어렵고 외근이 많아 연장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①**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1주 52시간 이하 유지)하고, ②**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였음. 또한, ③**장기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도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간헐적 야간 및 휴일근로를 **보상휴가제와 시차 출퇴근**으로 대응

☑ 기업사례 4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근로자 수 31명

- ▶ 전반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으나 간헐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가 발생. 개발 부서의 연장근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일정 주기가 없고, 업무 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로가 비주기적으로 발생, 업무처리 상 개인 재량이 요구되는 직무
- ▶ 특정시기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야간 및 휴일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제**로 인건비 감소 및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

② (업무효율화 추진) 집중시간 근무제 운영,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업무일지 공유, 문서 전자화, 회의·보고 간소화 등 업무효율화

☑ 기업사례 5 * 연구개발(약물전달법 연구), 근로자 수 7명

- ▶ 직원들은 대부분 연구직(5명), 정부 추진 R&D과제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적어 각 개인의 업무(특히 이전, 출원, 홍보자료 작성, 회계)도 병행하고 있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종종 발생
- ▶ **10시~12시, 14시~16시 코어타임(집중근무제도) 설정** 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및 사내홍보를 통해 정시퇴근 유도, 08시~17시, 09시~ 18시 두 가지의 기본 근로시간(선택근로제)을 도입

☑ 기업사례 6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 수 13명

- ▶ 상시 근로자 13명이 유명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등의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지원을 하고 면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부 업무 일정 등으로 추가 업무시간이 발생하고 인력 1인당 사내 업무가 과중된 상황
- ▶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공유('21.5월 시행)**, 유튜브 영상 제작 시 **외부인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산**하는 등 업무효율화 추진

붙임

☑ **기업사례 7**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 제조업, 근로자 수 11명

- ▶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사업장으로 소규모업체의 특성상 제품 제조·설치·유지보수 등의 부서 구분이 없어 각 공정과정에서 동선이 겹치고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서류 업무처리로 초과근무가 발생
- * 정전 및 주파수변동, 전압강하 등으로 인한 전자장비의 동작불안을 일정시간 정전압, 정주파수 등 양질의 전원을 무정전으로 공급해주는 전원공급장치
- ▶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선정(17~18시)하여 업무에 집중(회의·미팅 지양, 개인외출 금지, 통화메신저 사용 지양, 개인휴식 및 흡연 금지)하는 집중근무제를 시행('20.10월)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시퇴근의 날을 지정하여 시행

③ (근로문화 개선) 반반차(2시간) 제도 도입, 연차 사유 미기재 등 휴가 활성화 및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정시퇴근 문화 확산

☑ **기업사례 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 수 20명

- ▶ 개발과 납품기일에 맞게 작업을 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발생, 스타트업 벤처기업 단계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주로 개발팀 및 제품기획팀 (약 10명)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
- ▶ 반반차(2시간)제도 도입, 연차사용 사유 미기재, 미사용연차 통보 및 활용계획서 작성 독려, 보상휴가제 시행 등 휴가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홍보하여 정시퇴근 문화 확산

☑ **기업사례 9** * 언론출판업 및 B2B통합거래플랫폼 운영, 근로자 수 37명

- ▶ 산업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출판업과 산업제품에 대한 B2B통합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7년 국내 최초 '산업 비교견적 B2B 마켓플레이스'인 온라인 사이트 오픈 준비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사자 및 연장근로 발생
- ▶ 정시퇴근 문화 확산 및 연차 사용촉진을 통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으며,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
- * '19.12.16.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행(교령자 계속고용, 연차사용 촉진 내용 추가 등)

붙임

참고 1 IT-SW 기업, 연구개발 부서 등의 근로시간제도 활용 사례 12개

1 유연근무제 활용(6개 사례):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① A 기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수	5명	근무형태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v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v	집중시간 근무제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v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2주 3개월내 3-6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v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v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v	기타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현 황]					
	○ 당사는 초저지연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					
	- 당사 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 근로자 2명은 노동시간단축 시행(5.1.) 전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단축 조치]					
○ (근로자 신규 채용) '21.3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인력확보 차원의 신규채용* 실시						
* 신규 채용자 1명('21.3월)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인건비 매월 190만원, 6개월)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9월부터 현장실습 후 11월 채용 예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20.12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유동성이 많아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 하고 주 52시간제를 준수토록 보완책을 마련함						
○ 의무 근무시간대는 11:00~16:00, 시작시간대는 07:00~11:00, 종료시간대는 16:00~20:00 로서 근로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 '20.5월부터는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음						
○ (업무효율화) 잦은 보고 및 회의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업무효율화 및 업무시간 확보차원에 따라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으로 대체						
○ 휴가활성화를 위해 반차제도 도입						
○ (근로시간 현황 통보 및 관리) 주별 근로시간 현황관리 시스템 도입 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시간 체크 및 관리를 통해 주52시간이 안착 될 수 있도록 함						
[조치 결과]						
○ 위 단축조치 시행 결과, 2021.5월부터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신규채용 및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져 주52시간 제도가 안착되는 효과가 있었음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붙임

② B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근로자수	36명 (사무직: 36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경기 성남시
컨설팅 제공 현황	※ 사업장에 제공한 모든 컨설팅 유형을 체크(<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근무체계 개편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제도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소정근로시간 단축 : 주40시간 → 주37.5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연근로제 도입 ※ '유연근로제 도입'의 경우 세부 유형을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탄력적 근로시간제 < <input type="checkbox"/> 2주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3~6개월 >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근로시간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량근로시간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상휴가제)				
사업장 실태 및 컨설팅 주요 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무직의 경우 주 5일 근무제(월~금)이나 종종 토요일 근로(9시~15시)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차주 평일 중 1일 보상휴가(7.5시간/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합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양식을 회사 사정에 맞게 정비하여 제공하여 컨설팅 종료와 함께 즉시(도입시기 : 21년 6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p>[컨설팅 및 단축 조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존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이 12시~13시까지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상 실근로시간을 1일 7.5시간, 주 37.5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주 14.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함. ○ (재량근로시간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연구개발직의 경우 업무 특성(소프트웨어개발 등) 고려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도입(도입시기 : 21년 6월)하였으며, 동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도입시기 : 21년 6월)하여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2주 평균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직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고객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장 사정상 종종 주 52시간을 초과 ⇒ 영업직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를 사원 자율에 맡기는 대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도입시기 : 21년 6월)함. 다만, 동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필요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 후 주 52시간 한도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도록 함.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붙임

③ C 기업: 전기·전자 제조(LCD, SEMICONDUCTOR)

근로자수	40명 (생산직: 35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경기 수원시
컨설팅 제공 현황	※ 사업장에 제공한 모든 컨설팅 유형을 체크(<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근무체계 개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시간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제도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로제 도입 ※ '유연근로제 도입'의 경우 세부 유형을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탄력적 근로시간제 < <input type="checkbox"/> 2주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3~6개월 >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로시간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보상휴가제)				
사업장 실태 및 컨설팅 주요 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기업은 경영지원, 구매팀, 제조, 설계부서 등으로 조직 구성. 주로 설계 부서, 제조(설치 등 외근 포함)의 경우에서 예측이 어려운 발주 물량, 외근, 작업 프로세스로 인하여 1주 12시간이 초과되는 연장근로가 다수 발생함. 특히 외근을 다녀 오는 경우 외근지 거리, 외근 업무 처리 시간 등으로 인하여 평소 근로시간보다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사업의 특성상 물량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특성이며 외근이 많다는 점도 큰 특징임. 이런 점에서 연장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p>[컨설팅 및 단축 조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은 어려운 상태였고,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작업시스템 개선을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권유 ○ 또한 외근과 출장이 잦은 제조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법한 근로시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내 ○ 장기적으로 부서별 인원을 확충하여 특정 팀의 근로시간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신규인력 보완 방안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에 인건비 상승을 일부 억제하기 위한 다수의 지원금을 안내 하였으며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제안 <p>⇒ 이러한 컨설팅 안에 대하여 동 기업은 현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서 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 → 1주 52시간 내 근로시간을 유지 ② 주별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여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근로시간을 단축 ③ 또한, 장기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진행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④ D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근로자수	5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대전 유성구
컨설팅 제공 현황	※ 사업장에 제공한 모든 컨설팅 유형을 체크(■ 표기) <input type="checkbox"/> 근무체계 개편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제도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유연근로제 도입 ※ '유연근로제 도입'의 경우 세부 유형을 선택 <input type="checkbox"/>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 3개월 이내 □ 3~6개월>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근로시간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량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보상휴가제)				
사업장 실태 및 컨설팅 주요 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인력을 제외하고,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주말 근무 및 자택 근무를 한다고 하나, 자택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하지 않음 - 더욱이 출퇴근 시간이 사무직의 경우 고정되어 있으나, 개발자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적임 ○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 체결된 시점부터 영역이 완료될 때까지 사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불명확하기에 "인력을 총원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채용식 근로시간 단축은 당 사업장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p>[컨설팅 및 단축 조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실제 당사의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나, 실제 출입 카드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음 ○ 근태기록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재량근로시간'의 업무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도 재량근로시간제에 부합하여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여 컨설팅함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혹시 모를 60시간 초과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연장근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함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⑤ E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근로자수	31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서울 강남구
컨설팅 제공 현황	※ 사업장에 제공한 모든 컨설팅 유형을 체크(■ 표기) <input type="checkbox"/> 근무체계 개편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제도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유연근로제 도입 ※ '유연근로제 도입'의 경우 세부 유형을 선택 <input type="checkbox"/>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 3개월 이내 □ 3~6개월> ■ 선택적 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사업장 실태 및 컨설팅 주요 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으나 간헐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 - 개발 부서 중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4인을 선정하여 실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으나, - 4인 중 1인, 5주 중 1주만이 주52시간을 초과함. 나머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개발 부서의 연장근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일정 주기가 없고, 업무 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로가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업무처리 상 개인의 재량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직무임 <p>[컨설팅 및 단축 조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서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제 도입을 제안 ○ 철야 및 휴일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감소 및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설계 ○ 현재 시차출퇴근제 및 부서별 재택근무를 진행 ○ 올해 7월부터 내부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올해 안(2021.12.31.)에 근로자 대표 선임 및 보상휴가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요건을 충족할 예정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⑥ F 기업: 제조업(EV Relay)

근로자수	80명 (생산직:52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충북 청주시																				
컨설팅 제공 현황	※ 사업장에 제공한 모든 컨설팅 유형을 체크(■ 표기) <input type="checkbox"/> 근무체계 개편 ■ 근로시간 관리 강화 ■ 정부지원제도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유연근로제 도입 ※ '유연근로제 도입'의 경우 세부 유형을 선택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 3개월 이내 □ 3~6개월>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사업장밖주간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사업장 실태 및 컨설팅 주요 내용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구분</th> <th>1일 연장근로</th> <th>주4일 근로</th> <th>휴일근로</th> <th>소계</th> </tr> <tr> <td>연장근로</td> <td>2시간</td> <td>2시간 x 4일</td> <td></td> <td>8시간</td> </tr> <tr> <td>휴일근로</td> <td></td> <td></td> <td>8시간</td> <td>8시간</td> </tr> <tr> <td colspan="4">총 1주 연장근로 분석</td> <td>16시간</td> </tr> </table>					구분	1일 연장근로	주4일 근로	휴일근로	소계	연장근로	2시간	2시간 x 4일		8시간	휴일근로			8시간	8시간	총 1주 연장근로 분석				16시간
	구분	1일 연장근로	주4일 근로	휴일근로	소계																				
연장근로	2시간	2시간 x 4일		8시간																					
휴일근로			8시간	8시간																					
총 1주 연장근로 분석				16시간																					
[컨설팅 및 단축 조치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연장근로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 교대제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 생산량 증가 ○ 현재 80명(연초 대비 40명 증가)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초과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및 생산 장비는 증설하였으나, 아직 증설한 생산 장비의 가동이 본격화되지 않아 가동 이후에는 근로시간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팀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제한적이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함 ○ 또한 회사가 석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석식 이후 업무 복귀 시간이 개인별로 제 각각임을 고려, 휴게 시간 30분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되, 실 근로시간에서는 제외(취업규칙 개정 완료) ⇨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지를 토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유급)휴게시간 부여 +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를 통해 주52시간제 초과 문제 해소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② 업무효율화 추진(4개 사례): 집중시간 근무제, 회의·보고 간소화 등

⑦ G 기업: 연구개발(DDS<약물전달법 연구>)

근로자수	7명 (연구직: 5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경기 하남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v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신규 채용	v	집중시간 근무제	v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2주 3개월 3-6개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v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v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v	기타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현황] ○ 직원들은 대체로 연구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관계로 각 개인의 업무(특히 이전, 출원, 홍보자료 작성, 회계)도 병행 하고 있어 1주에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종종 발생 함 [단축 조치] ○ 신규인력 채용 :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신규인력 1명을 채용했으며, 향후로도 추가인력 고용 예정 ○ 고정형 시차출퇴근제 도입 : 08:00 ~ 17:00, 09:00 ~ 18:00 두가지의 기본 근로시간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개인여건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조정 가능하도록 함 ○ 집중근무제도 도입 : 10:00 ~ 12:00, 14:00 ~ 16:00 코어타임 설정 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및 사내홍보를 통해 정시퇴근 유도 ○ 가정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설정하여, 임직원들의 정시퇴근 권장 ○ 휴가활성화 : 연차, 월차 사용 촉진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 [조치 결과] ○ 단축 조치 이전 직원들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었으나, 단축 조치 이후 전 직원 일일 근로시간 평균 9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가정의 날 등에는 연장근무 최소화를 통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됨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⑧ H 기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수	13명 (사무직: 13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집중시간 근무제	√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	인력 채용	√
	탄력근로제	2주 3개월내 3-6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기타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 13명이 유명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등의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지원을 하고 면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부 업무 일정 등으로 추가 업무시간이 발생하고 인력 1인당 사내 업무가 과중된 상황 <p>[단축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로 출·퇴근 시간제 등록하고 관리를 함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21.3월), 사내 메신저 사용 적극 권장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구글 드라이브를 통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직원들이 작성하고 공유하여 (‘21.5월 시행) 효율성 도모함 월례 회의때 사내 정시퇴근 문화를 장려하고 홍보하여 주52시간 시행함(‘21.5월) 유튜브 영상제작 시 업무담당자 1인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전문인력 필요성 및 근로 시간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인력(개인)과 업무컨설팅을 체결 → 영상 제작 및 외부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1년 계약 1억원)하여 업무 분산 및 내부 직원의 노동시간 단축(‘21.2월)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⑨ I 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 제조업

근로자수	11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대전 대덕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집중시간 근무제	√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2주 3개월내 3-6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기타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p>[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사업장은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20. 10. 30. 조기단축을 완료하여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II유형) 신청('21. 7. 6.)→ 지원(5명, 600만원) * 정전 및 주파수변동, 전압강하 등으로 인한 전자장비의 동작불안을 일정시간 정전압, 정주파수 등 양질의 전원을 무정전으로 공급해주는 전원공급장치 (주52시간 초과이유) 소규모업체의 특성상 제품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의 부서 구분이 없어 각 공정과정에서 동선이 겹치고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 관리, 해외 영업 사무직의 경우 제조 관련 인증 서류 및 자료 준비로 인한 초과근무가 간헐적 발생 <p>[단축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정시퇴근 문화 확산 - (집중시간 근무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여 발생하는 연장·휴일 근로 해소를 위해 집중시간 근무제 시행('20.10월 시행) *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선정(17~18시)하여 업무에 집중(회의·미팅 지양, 개인이출 금지, 통화·메신저 사용 지양, 개인휴식 및 휴연 금지) → 시행 2개월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 (정시퇴근 문화 확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시퇴근 날을 지정 ('20.10월 시행)하고,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공지·독려하여 전 임직원 퇴근 실시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붙임

⑩ J 기업: **(주)컨피테크(소프트웨어개발)**

근로자수	17명 (생산직: 14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서울 마포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	집중시간 근무제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2주	3개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기타	√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자동차 관련 서비스 및 플랫폼개발 사업, 케이티의 와이파이 개발 사업, 교육업체의 콘텐츠 이러닝 개발 분야 위주의 사업 운영 - 소프트웨어산업의 일반적 특성상 정규시간 외 추가근무의 일상화, 프로젝트 공정 및 납기일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수행과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다수 발생 					
	[단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 채용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비효율적 업무 수행 관행과 관리자의 근로시간 관리 부재 등을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 - 직원들의 근무시간 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워라벨의 일과 가정을 동시 만족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부터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인력채용 1명(20.12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주 52시간제 시행(20.12.30), '21.1.1.부터 일 8시간 근무 후 정시 퇴근(21.1.1.)을 실시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내 근무 유지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직원의 워라벨이 있는 생활로 만족도 증대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붙임

③ 근로문화 개선(2개 사례): **휴가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⑪ K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수	20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서울 서초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	집중시간 근무제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2주	3개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	휴게 유급화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	기타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장은 AI와 영상처리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방송통신계측 및 Smart Factory 검사시장에 장비와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임 - 개발과 납품기일에 맞게 작업을 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발생, 스타트업벤처기업 단계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 - 주로 개발팀 및 제품기획팀 (약 10명)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있었음 					
	[단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채용: 지속적인 신규인력 채용 * 근로자수: '19.12월 기준 16명 → '20.5월 기준 21명 ○ 선택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시행(출근 8~10시 자율 출근) ○ 보상휴가제: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휴가(1.5배, 야간2배), 휴가 독려 ○ 업무효율화: 문서 전자화와 공유페이지 활용으로 회의·보고시간 간소화 ○ 정시퇴근문화 확산: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시행 및 홍보 ○ 휴가 활성화: 반반차(2시간)제도 도입, 연차사용 사유 미기재, 3년마다 Refresh 휴가 지원금(100만원)지급, 미사용연차 통보 및 활용 계획서 작성 독려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10명 정도였으나, 조치 후 2021. 5월 이후부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없음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⑫ L 기업: 언론출판업 및 B2B통합거래플랫폼 운영

근로자수	37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소재지	서울 구로구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 표기)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신규 채용	√	집중시간 근무제		PC-OFF 시스템		
	교대제 개편		업무 효율화		인력 채용	√	
	탄력근로제	2주	3개월	정시퇴근 문화 확산	√	휴게 유급화	
		3-6개월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	기타	√	
사업장 실태 (52시간 초과 이유) 및 단축 조치 주요내용	[현 황]						
	○ 등 사업장은 산업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출판업과 산업제품에 대한 B2B통합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7년 국내 최초 '산업 비교견적 B2B 마켓플레이스'인 온라인 사이트 오픈 준비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사자 및 연장근로 발생						
	[단축조치]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규채용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2019년 12월) - 신규인력 계속채용(2019. 12월 32명 → 2021. 5월 39명) - 고령자 계속 고용(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축적적으로 재고용) - 정시퇴근 문화 확산 및 연차 사용촉진을 통한 휴가활성화 → 2019.12.16.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행(고령자 계속고용, 연차사용 촉진 내용 추가 등) ○ 노동시간 단축확인서 발급(20.8.27. 발급, 19.12.16. 시행) - 서울관악지청 제2020-07-0005호 ○ 후속조치로 반차제도 도입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 조기시행 → 2020.12.31. 제도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행 예정						
[조치결과]							
○ 근로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이직현상 예방, 근로자 휴식권 보장 및 신규사업 조기안정화에 기여							
정부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참고 2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유형	내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제51조, 제51조의2)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제52조)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재량 근로시간제 (법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9-36호)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 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정·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법 제58조 제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